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576호

『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』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『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』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- 기술료 관련 법률*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정비 등

*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8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8조

2. 주요 내용

- 가.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“기술료 납부이행 협약서”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(안 제3조)
- 나.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 납부 근거 마련 (안 제4조)
- 다. 기술료 감면 처리기준 세분화 및 일시 납부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 등 (안 제5조)
- 라. 기술료의 효율적인 징수·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징수한 기술료로 집행 (안 제6조)

- 마. 기술료 계약, 징수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(안 제8조)
- 바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반영하여 시행일 및 유효기간(시행일로부터 3년) 재설정 (안 제9조)
- 사. 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서식 마련 (별지 서식)
- 아. 기술료 징수유예 및 감면 등 기준 (별표1, 2)
 - [별표 1] 기술료 징수유예(분할납부 포함) 기준 신설
 - [별표 2]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신설

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개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|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전자우편, 방문·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dkim96@korea.kr
- 2) 방문·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
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
- 3) 팩스 : 044-204-7759

라.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(전화 (044) 204-77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 - 법령정보 - 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(붙임)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전문
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

전부개정 2011. 11. 18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80호
개정 2024. 00. 00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00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및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·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.

1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
2.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1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
3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97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

제2장 기술료의 징수

제3조(기술료 납부)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이하 "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"이라 한다.)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,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기술료 납부대상 요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제4조(기술료 유예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

1.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
2. 현저한 경영 악화
3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(연장요청 시 기준)로서 매출액 저조

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(종합신용평가등급이 열위(C등급 이하) 또는 불량인 경우)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의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
2.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
3.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, 각 1회에 한한다.

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.

⑥ 삭제

⑦ 제5항에 따라 징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.

제5조(기술료 감면 및 면제) ① 삭제

② 삭제

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, 폐업,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.

④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.

1. 공정·품질 R&D 사업 주관기업

2.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

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.

제6조(기술료 관리) ① 기술료 관리·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업무 수행을 총괄 대행하는 전문기관(이하 "총괄전문기관"이라 한다.)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·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,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(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)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,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전망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
2.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
3. 기술료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
4.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제7조(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전문가 활용)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1.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
2.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, 징수,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

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재검토 기한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(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,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[별표 1] 기술료 징수유예(분할납부 포함) 기준 (제4조)

| 기술료 금액 기준 | 연장기간 | 분할납부 횟수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3천만원 이하 | 1년 이내 | 3회 이내 |
|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| 2년 이내 | 4회 이내 |
| 1억원 이상 | 2년 이내 | 6회 이내 |

[별표 2]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(제5조)

| 구분 | 세부내용 | 감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적·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|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| 미납금액 |
|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|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| 미납금액 |
| | 집행 불능,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| 미납금액 |
| |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| 미납금액 |
| |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|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<u>세까지로 한다)을 신규 채용하여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, 기술료 징수기간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(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)로부터 2년간 유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5조(기술료 감면 및 면제)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(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)로부터 2년 후 시점에서 제4조 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, 유예된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(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)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신규채용 인력이 사망·이민·장기치료 등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대체인력(최초 신청인원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용자에 한함) 채용을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, 폐업,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제</p> | <p><u>⑦ 제5항에 따라 징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기술료 감면 및 면제) ① <삭 제></p> <p><u>② <삭 제>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재</u> <u>처분평가단의</u> -----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<u>재처분평가단의</u>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 <신설></p> <p>제6조(기술료 관리) ① ~ ② (생략) <신설></p> <p>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<u>징수실적</u>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, 전월에 징수한 <u>기술료</u>를 매월 20일까지 총괄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며,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술료 <u>징수전망</u>을 포함한 기술료 <u>징수실적</u>을 총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 <신설></p> | <p>----- ----- - <u>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기술료 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----- <u>징수 및 사용 실적</u>----- ----- <u>기술료(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)</u>를 ----- ----- -- <u>징수 및 사용 전망</u>----- <u>징수 및 사용 실적</u>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 ④와 같음)</p> <p>제8조(전문가 활용) ① <u>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<u>제8조(재검토 기한)</u>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.</p> | <p>3.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, 징수,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9조(재검토 기한)</u>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|
| 부 칙 | |
|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
| <p><u>제2조(청년인력 고용에 관한 적용례)</u> 제4조 제6항,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.</p> | <p><u>제2조(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</u>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</p> |
| <p><u>제3조(경과규정)</u>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,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.</p> | <p><u>제3조(경과조치)</u> 연구개발과제 협약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,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.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[별지 서식] 기술료 납부대상 협약서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[별표 1] 기술료 징수유예(분할납부 포함) 기준 (제4조)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[별표 2]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(제5조)</p> |

[별표 1] 기술료 징수유예(분할납부 포함) 기준 (제4조)

| 기술료 금액 기준 | 연장기간 | 분할납부 횟수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3천만원 이하 | 1년 이내 | 3회 이내 |
|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| 2년 이내 | 4회 이내 |
| 1억원 이상 | 2년 이내 | 6회 이내 |

[별표 2] 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(제5조)

| 구분 | 세부내용 | 감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적·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|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| 미납금액 |
|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|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| 미납금액 |
| | 집행 불능,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| 미납금액 |
| |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| 미납금액 |
| |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|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|